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4.11.22.] [대통령령 제25767호, 2014.11.21., 일부개정]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직접 영업장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危害) 축산물 등을 판매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672호, 2014.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생검사 등 요청의 요건 및 절차 마련(제20조 신설)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영업장 등에 대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생검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요

청한 자가 원하는 방법이나 문서로 알려주도록 함.

나. 위해 축산물 등의 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26조의3 신설)
위해 축산물 등을 판매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축산물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 대통령령 제2576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기준)”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도”를 “위반 정도”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로 하고,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게시

제31조의2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